

의정부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재나7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3. 6. 15.

판 결 선 고 2023. 7. 13.

재심대상판결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12. 24. 선고 2014가단34679 판결 2.

화)정부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9나310 판결3. 의정부지방법원 2022. 4. 12. 선고
2021재나21 판결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항 소 취 지 및 재 심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0,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각 재심대상판결 및 2.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소송의 경과

가. 제1재심대상판결의 경과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34679호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제1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5나1261호로 항소하였는데, 2015. 5. 19. 조정이 성립되어 같은 날 확정되었다.

나. 제2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차임, 원상회복비용, 구조물설치 철거비용, 재물손괴비용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소24049호), 위 법원은 2018. 12. 19. 원고의 소 중 차임, 원상회복비용, 구조물설치 철거비용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원고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9. 6. 1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9나310호, 이하 ‘제2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를 선고하였다.

3) 원고는 제2재심대상판결에 관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법원에서 2019. 8. 29.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대법원 2019다15793호), 이에 따라 제2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제3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원고는 제2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9재나127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2. 24. 이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1다4666 판결)이 선고되었다.

2) 원고는 제2재심대상판결 및 2019재나127호를 대상으로 의정부지방법원 2021재나21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2. 4. 12. 이를 각하하는 판결(이하 ‘제3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4281 판결)이 선고되었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제1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제1재심대상판결은 그 항소심에서 중국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하고 조정의 성립으로 그 소송이 종료되었으므로, 조정조서에 대하여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확정된 중국판결이 아닌 제1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

나. 제2, 3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451조 2, 3, 4, 7, 9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재심사유 존재 여부

확정된 중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는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를, 제3호는 “법정대리권 ·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를, 제4호는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를, 제7호는 “증인 · 감정인 · 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제9호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1)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 · 증명하여야 하고,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재다518 판결,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재다87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2, 3, 4, 7, 9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위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 채 각 재심대상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 재심사유는 그 자체로 위 각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이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추가 판단

법원에서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가 기각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재다30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이미 제2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두 차례 재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9재나127호, 의정부지방법원 2021재나21호)를 제기하였다가 모두 각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적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재심사유를 주장하며 제2, 3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귀옥, 판사 이민영, 판사 옥제영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